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4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김상훈 · 이현승 · 고동진
김형동 · 이종욱 · 박충권
최보운 · 강대식 · 이달희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사”를 “이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 중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를 “나목 또는 다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등”으로 한다.

다.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책임

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한회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등”으로,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을 “열람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무제표”

를 “재무제표(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인 회사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4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3.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유한책임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4. 그 밖에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u>주식회사 및 유한회사</u> 를 말한다.	1. ----- ----- <u>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u>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임원”이란 <u>이사</u> ,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u>이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 -----.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 ----- ----- ----- -----

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생략)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③
(생략)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선정 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
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생략)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유한회사 또
 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
 회사등”이라 한다)인-----

-유한회사등으로-----

--유한회사등에-----.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
사반

⑤ ~ ⑨ (생략)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
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
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
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라. 나목 또는 다목 외의 감
사가 없는 유한회사등----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등-----열람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
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
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
기총회 또는 이사회를 승인

는-----
-----.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
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전
문기업인 회사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4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
는 회사

3.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
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유한
책임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4. 그 밖에 매출액, 이해관계인
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회사

③ -----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⑦ (생략)

-----재무제표(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⑦ (현행과 같음)